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4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조 례 명	쪽수
2024-77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4-78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9
2024-79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담당관)	15
2024-80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략담당관)	19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7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무비율을 명시하고 그 기능을 구체화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함(안 제8조·제9조)

- 1)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의 위원 비율을 20퍼센트 이상 구성
- 2) 심의사항 추가

가)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나.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확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신설함  
(안 제11조·제12조의2·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7. 12.~8.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제3호를 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
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이 경우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5.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6.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별·연령·계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나.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6조(주민의견수렴 방법)</b>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 &lt;신 설&gt;</p> <p>2.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p> <p>3.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p> <p><b>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b>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의 사항</p> <p>2.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b>제9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p>	<p><b>제6조(주민의견수렴 방법)</b>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1. 공청회 또는 간담회</p> <p>2. 설문조사</p> <p>3. 사업공모</p> <p>4.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p> <p>5.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p> <p><b>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b>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p> <p>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p> <p>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이 경우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p> <p>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p> <p>5.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p> <p>6.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b>제9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p>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별·연령·계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나.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  
용한 경우

6.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7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의무를 강화함(안 제5조·제8조·제14조의2)

- 1) 이율이 높은 계좌로 기금 관리
- 2)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 3) 심의안건 보충자료에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작성을 의무화
- 4) 연도별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 1)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제16조

나. 예산조치: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5억원(2024. 6. 30. 기준)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7. 12.~8. 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계좌”를 “이율이 높은 계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6.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심의자료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 참고자료로 붙여야 한다.

1. 계좌정보
2. 예치금액
3. 약정기간
4. 이자율
5. 예상이자액 등

②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2.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제1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u>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u>계좌</u>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p>	<p><u>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u>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u>이율이 높은 계좌</u>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p>
<p><u>제8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u>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u>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li> <li>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li> <li>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li> <li>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li> <li>5.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li> <li>6.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14조의2(심의자료 등)</u> ① 군수는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 참고자료로 붙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좌정보</li> <li>2. 예치금액</li> <li>3. 약정기간</li> <li>4. 이자율</li> <li>5. 예상이자액 등</li> </ol> <p>②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li> </ol>

2.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나. 관련 조문: 존속 기한(안 제16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가. 재정상황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추계 어려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여유재원 발생 시 통합계정 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세입 감소 경기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특별회계로 진출하여 활용

다. 기금 조성액 변화(연도말 잔액)

(단위: 억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00	1,522	1,356	1,347	808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7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행사 및 공모전 등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신설함(안 제16조)
- 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신설함(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6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7. 19.~8.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부제도의 활성화)**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행사 및 홍보
2. 공모전
3.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
3.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p><b>제16조(기부제도의 활성화)</b> ① 군수는 <u>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교육, 행사 및 홍보</u></li> <li>2. <u>공모전</u></li> <li>3. <u>교류사업</u></li> <li>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li> </ol>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b>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b> ① <u>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u></li> <li>2. <u>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u></li> <li>3. <u>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② <u>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나. 관련 조문

1) 기부제도의 활성화(안 제16조)

2)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1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 연도 (24년)	2차 연도 (25년)	3차 연도 (26년)	4차 연도 (27년)	5차 연도 (26년)	합계
군비	60	60	60	60	60	300

### 3. 관련 의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로 기부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인쇄물 제작 등: 60백만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8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축구의 대중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드론 레저·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및 시설을 정함(안 제8조)
- 나. 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및 면제를 정함(안 제9조)
- 다. 준용을 정함(안 제10조)
- 라.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제161조
- 2)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드론축구경기장 설치비용 2023년 군비 45,816천원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7. 18.~8.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종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축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이하 “드론축구경기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축구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1. 드론축구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 대기실
2. 드론축구의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 군수는 드론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나 행사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드론축구경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입장의 거절·퇴장
2.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
3. 이용자 준수사항
4.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
5.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6. 그 밖에 드론축구경기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육성사업
2.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3. 드론 교육 및 지원
4. 드론축구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p><u>제8조(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 ①</u>  <u>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축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이하 “드론축구경기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드론축구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드론축구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 대기실</u></li> <li><u>2. 드론축구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u></li> <li><u>3.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li> </ol>
<신 설>	<p><u>제9조(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u>  <u>군수는 드론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나 행사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신 설>	<p><u>제10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u>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드론축구장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입장의 거절·퇴장</u></li> <li><u>2.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u></li> <li><u>3. 이용자 준수사항</u></li> <li><u>4.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u></li> <li><u>5.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u></li> <li><u>6. 그 밖에 드론축구경기장 운영 및 관</u></li> </ol>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육성사업
2.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3. 드론 교육 및 지원
4. 드론축구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

[별표]

드론축구경기장 이용료(제9조 관련)

시설	기준	이용료	
		기본	추가
드론축구경기장	1회 2시간	30,000원	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기본요금의 30퍼센트 가. 토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및 시설

나. 관련 조문: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안 8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드론축구경기장 설치비용: 2023년 군비 45,816천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남열